

의안번호	제 974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옥규 의원 등 8인
발의연월일	2022년 1월 10일

#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옥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7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1월 10일

발 의 자 : 이옥규, 임영은, 박상돈,  
심기보, 오영탁, 육미선,  
김국기, 원갑희

## 1. 개정이유

- 관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관계법령 인용조문 및 명칭 정비
  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 →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(안 제12조제2항제1호)
  -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(안 제15조)
-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  - 단 → 다만(안 제3조)
  - 보궐위원 → 새로 위촉된 위원(안 제17조제4항)
  - 아니한 → 않은, 아니하다고 → 았다고(안 제20제1항제1호 및 제2호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,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,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.

##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단”을 “다만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제1호 중 “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”를 “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”로 한다.

제13조제4호 중 “연구·개발·도입·지도”를 “연구·개발, 도입, 지도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7조제4항 단서 중 “보궐위원”을 “새로 위촉된 위원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1호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아니하다고”를 “않다고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3조(기본원칙)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. 단,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지역여건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제12조(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조성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정부 외의 자(「<u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</u>」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)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3조(기금의 용도 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<u>연구</u>.</p>	<p>제3조(기본원칙)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. <u>다만</u>,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지역여건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조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정부 외의 자(「<u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</u>」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)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기금의 용도 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<u>연구</u>.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88 282 788 394">개발·도입·지도 및 보급 등의 사업</p> <p data-bbox="228 421 517 465">5.·6. (생략)</p> <p data-bbox="188 495 788 875">제15조(기금의 운용관리) 도지사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 data-bbox="188 976 788 1088">제1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(생략)</p> <p data-bbox="188 1182 788 1563">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, <u>보궐위원</u>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</p> <p data-bbox="228 1659 517 1704">⑤·⑥ (생략)</p> <p data-bbox="188 1727 788 1962">제20조(위원의 위촉 해제)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.</p>	<p data-bbox="919 282 1418 394">개발, 도입, 지도 및 보급 등의 사업</p> <p data-bbox="858 421 1243 465"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 <p data-bbox="818 495 1418 943">제15조(기금의 운용관리) 도지사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 data-bbox="818 976 1418 1155">제1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 data-bbox="818 1182 1418 1630">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, <u>새로 위촉된 위원</u>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</p> <p data-bbox="858 1659 1243 1704">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 <p data-bbox="818 1727 1418 2029">제20조(위원의 위촉 해제)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1.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<u>아니한</u> 경우 2.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<u>아니하다고</u> 인정되는 경우 3. (생략) ② (생략)	1.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<u>않은</u> 경우 2.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<u>않다고</u> 인정되는 경우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녹색건축물"이란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제9조(실태조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·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(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
2.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
3.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
4.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,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용,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27조(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(이하 "그린리모델링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·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

## 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

**제17조(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)**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·증축·개축·대수선 및 수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. 다만, 수선은 창·문, 설비·기기,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.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### 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,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